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YOUR SAFETY IS OUR STANDARD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유해물질기준과
2022.4.18.

식품의약품안전처

CONTENTS

01. 동물용의약품 관리체계

02. 축 ·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도입

03. 축 ·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추진현황

04. 향후 잔류기준 등 개정 사항

01. 동물용의약품 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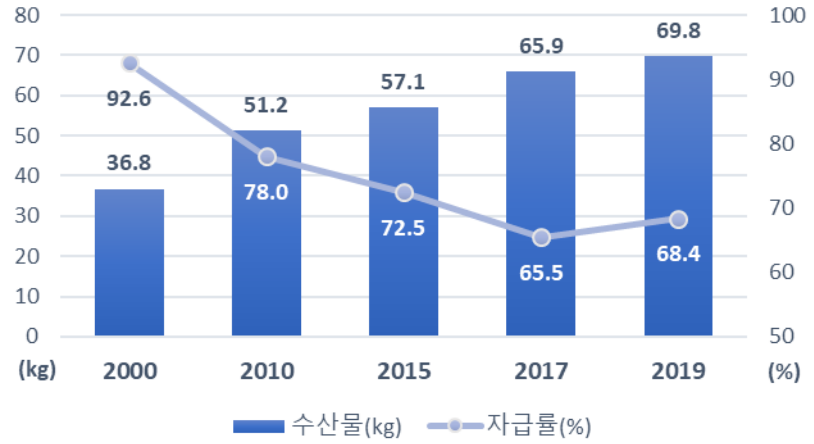
축 · 수산물 소비량 급증에 따른 생산 · 수입량 증가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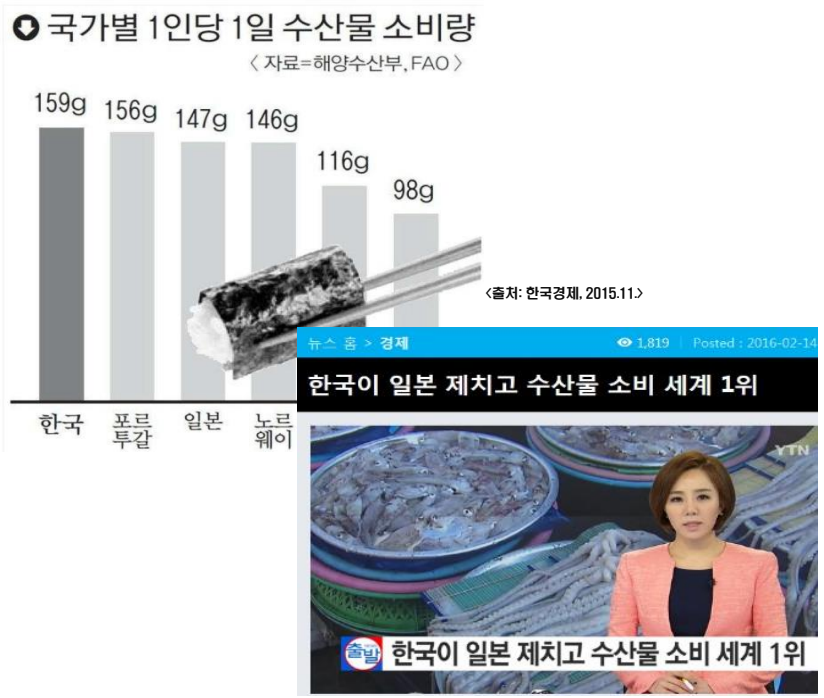


<출처 : 농림축산식품 2021년 주요통계>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



<출처 :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국가 간 교역 확대로 축 · 수산물의 수입 증가

- (축산물) 수입액 : ('09) 27조원 → ('14) 62조원 → ('19) 87조원
- (수산물) 수입액 : ('09) 32조원 → ('14) 50조원 → ('19) 55조원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동물용의약품이란?

-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란?

- 가축의 사육, 수산물 양식, 양봉시 사용한 동물용의약품이 축 · 수산물, 벌꿀 등 최종 식품에 잔류하여 인체 건강상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정부가 정한 수치 (mg/kg)

실제 동물에게 동물용의약품을 용법, 용량,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했을 경우**, **동물에 남아 있는 동물용의약품(또는 대사물질)의 양**을 근거로 설정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어떻게 사용? 안전하게, 제대로 사용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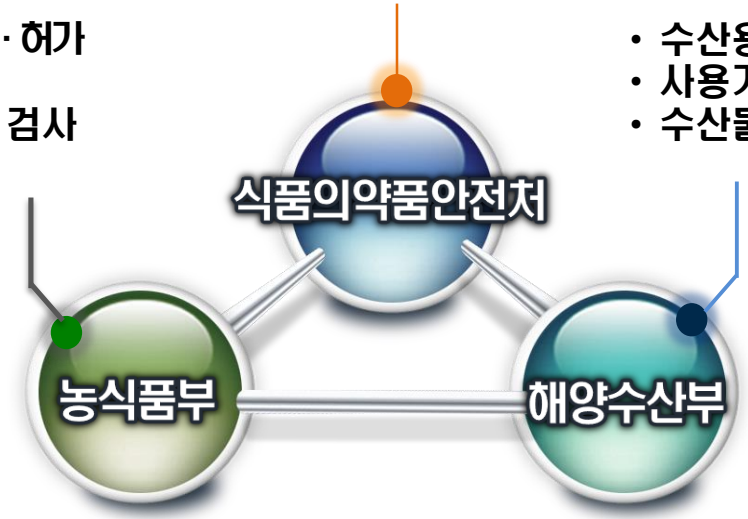
어떻게 판단? 검사 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로!

부처 협력 체계

- 잔류허용기준 설정
- 축수산물 중 시험법 개발
- 수입 및 유통단계 검사

- 축산용동물약품인·허가
- 사용기준 관리
- 축산물 생산단계 검사

- 수산용 동물약품인·허가
- 사용기준 관리
- 수산물 생산단계 검사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 동물용의약품 인 · 허가 및 제조 · 수입 판매

『약사법』(법률)

제85조(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의 질병을 진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제에 대하여는 사용 대상, 용법 · 용량 및 사용금지기간 등 사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동물의 체내에 남아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는 제제
2. 가축전염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 목적으로 투약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고 지정하는 제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조의2(품목 허가의 조건)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중략) 제조 · 수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잔류허용기준이 정하여진 후 해당 품목을 제조 ·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그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의 허가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9. 제10조의2에 따라 조건이 붙여진 동물용의약품은 잔류허용기준이 정하여진 후 제조하여 판매할 것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절차

『식품위생법』(법률)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3(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①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5조의2(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① 식품에 대하여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하 "잔류허용기준"이라 한다)의 설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 7]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설정 지침

제3조(신청대상) 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 대상인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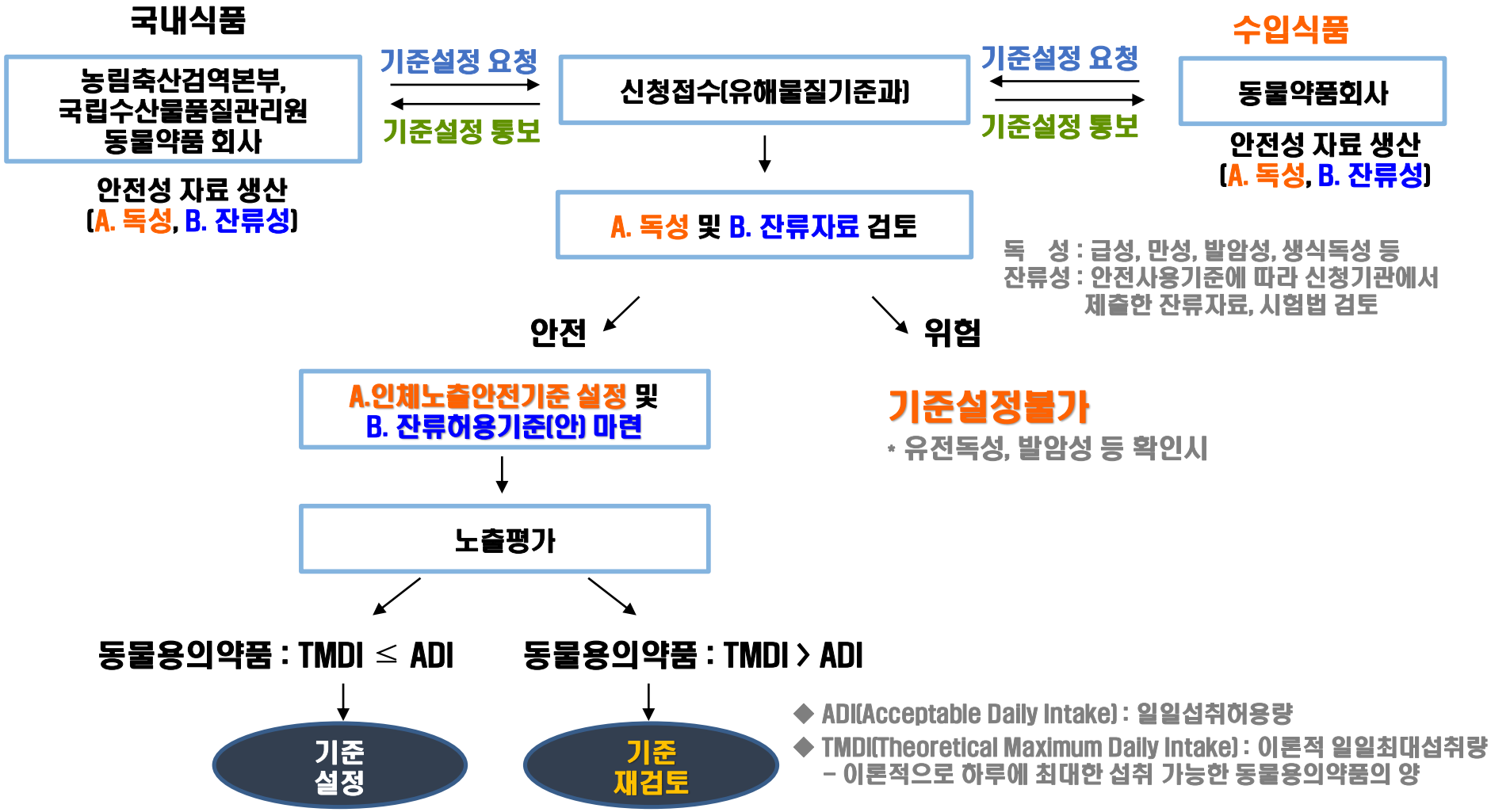
① 국내 식품

1. 국내 등록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2. 국내 등록을 신청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3. 과거에 사용하였거나 환경에 오랫동안 잔류 되어 기준설정이 필요한 농약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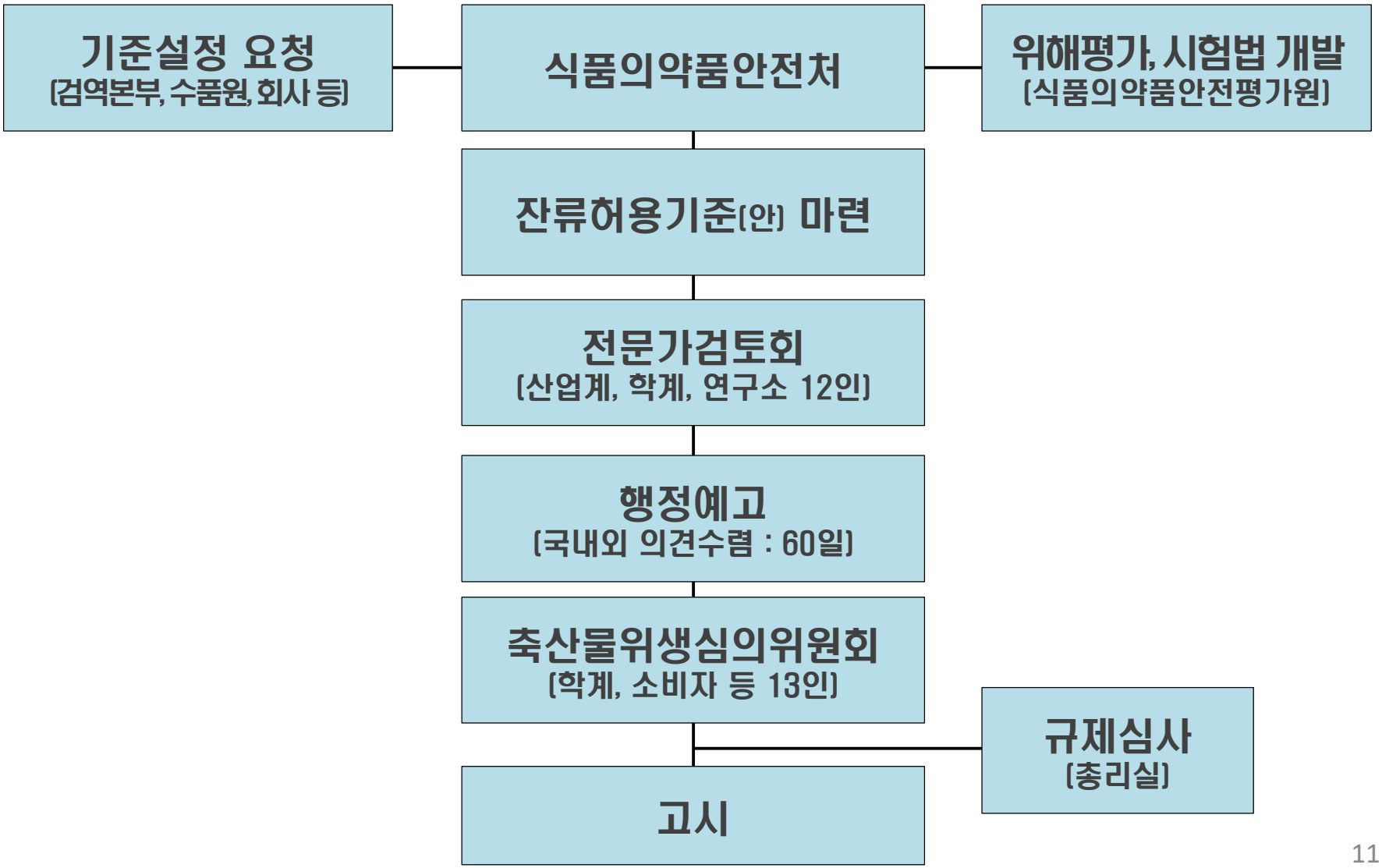
② 수입식품

1. 국내 등록되지 않았으나 외국에서 등록 및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2. 과거에 사용하였거나 환경에 오랫동안 잔류 되어 기준설정이 필요한 농약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절차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절차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IT) 절차

국내 새로운 동물용의약품 기준이 필요한 경우

축수산물 수출국과 국내 기준 조화가 필요한 경우

❖ 수입식품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IT) 신청

- 독성자료, 안전사용기준과 잔류시험 자료 제출 → 검토 → 기준설정

  사전검토 운영(공식 신청 전 자료 확인)

- 소요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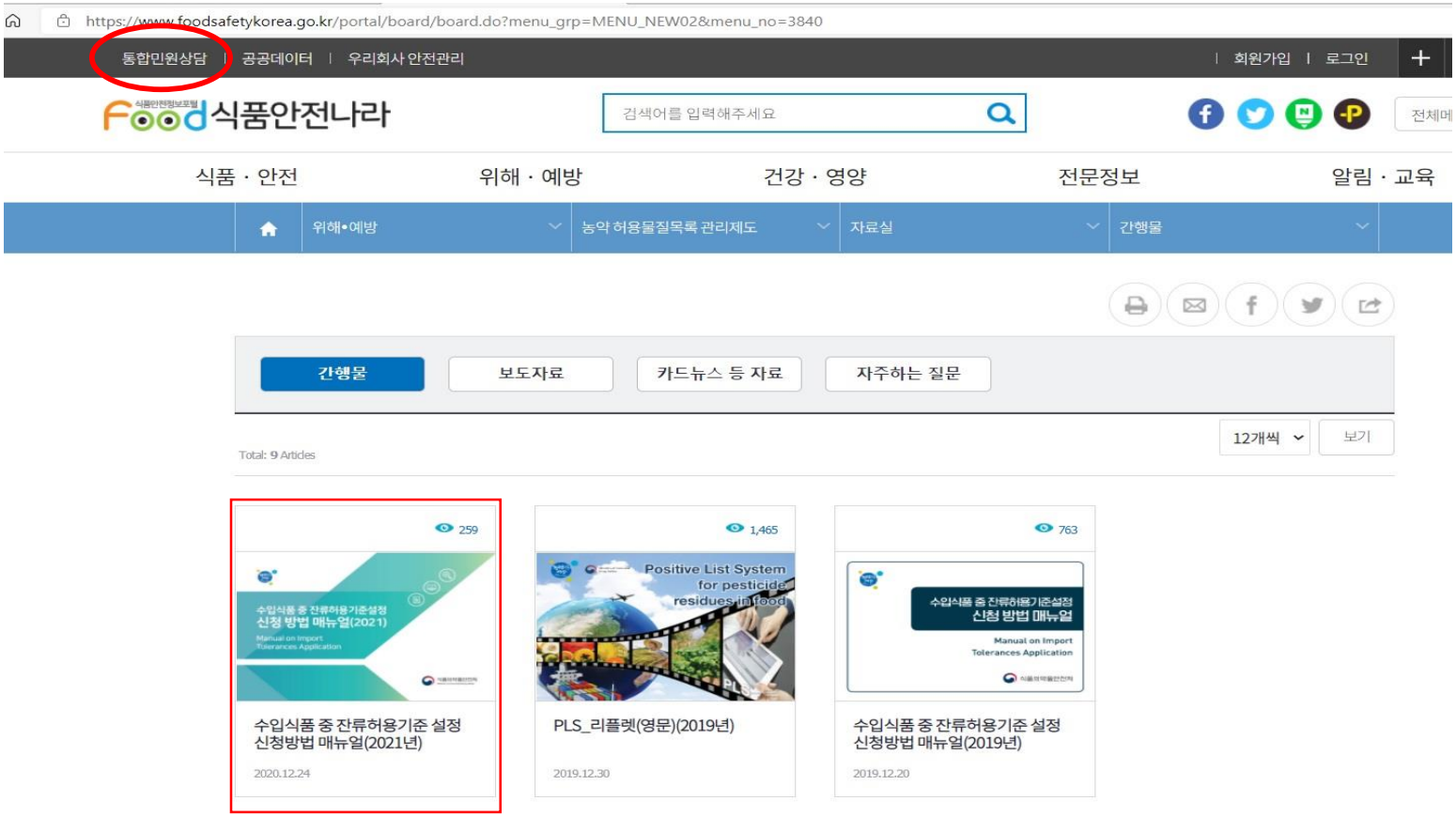
  (신규) 신청 받은 날부터 12개월

  (변경, 면제) 신청 받은 날부터 7개월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IT) 절차

수입식품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청 매뉴얼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o?menu_grp=MENU_NEW02&menu_no=38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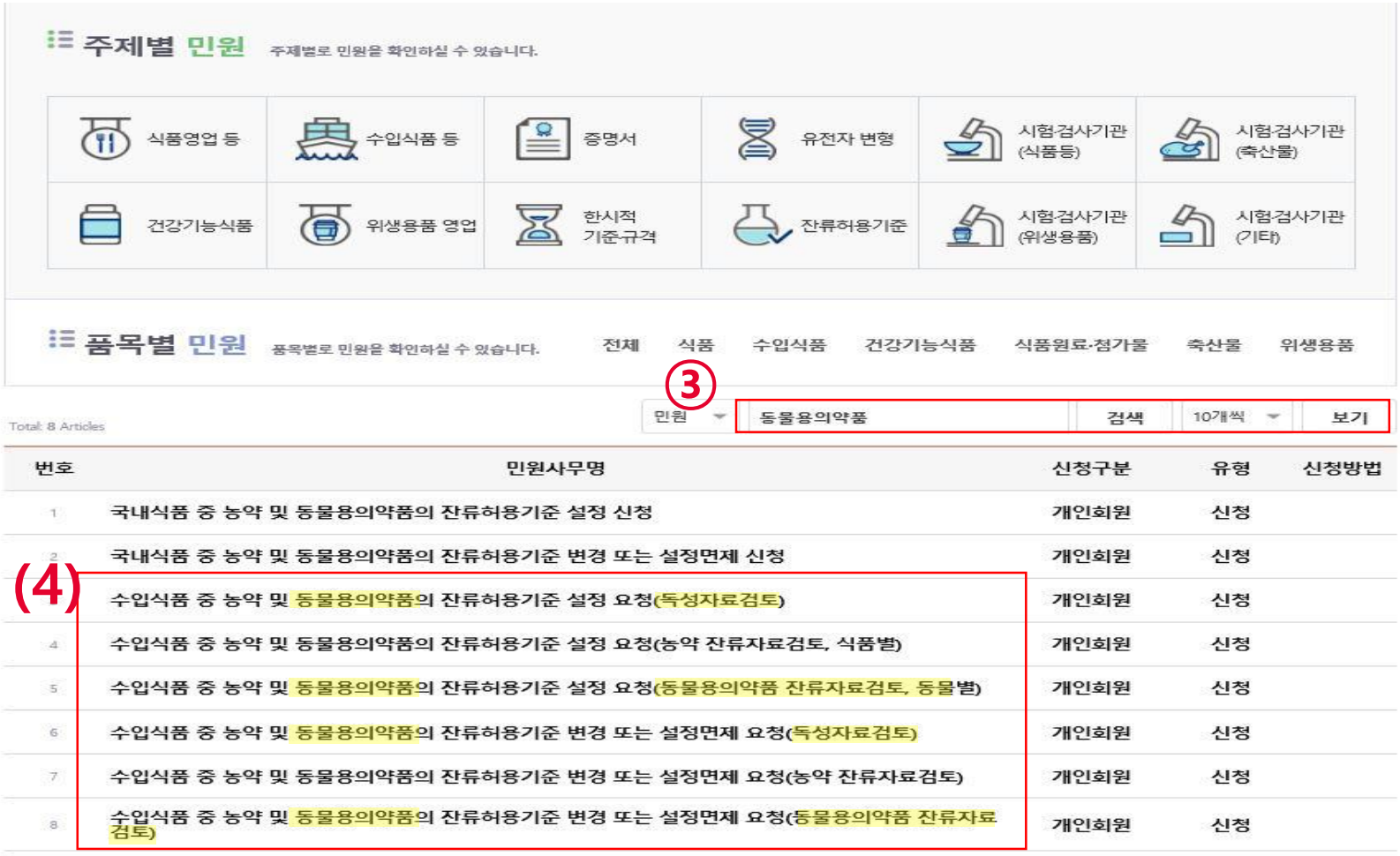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IT) 절차



1. Access the Food Safety Korea website (www.foodsafetykorea.go.kr), and select [Integrated Civil Service Consultation Service] (* Account login required)
2. [e-civil service] > [e-civil service application]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IT) 절차



3. Type [pesticide or veterinary drugs] in the civil service search box and click Search.
4. Choose the type of service.

02.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도입

잔류물질(동물약품, 농약) 위해정보 지속 발생



미국산 냉동 닭고기,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검출… 판매중단·회수조치

미국산 쇠고기, 발암성 성장촉진제 기준 초과

락토파민·질파테롤 검출…국내 사용중단해야

중국산 냉동가염난황, 사용금지물질인 “메트로니다졸” 및 “오플록사신” 검출로 수입중단 (2019)

덴마크산 닭고기, “나이카바진” 검출로 수입중단 (2019)

계란에서 살충제 검출 (2017)



대만, 태국산 ‘흰다리 새우살’에서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검출로 반송 · 폐기 조치 (2020)

- 새우 양식장에 ‘트리플루라린’ 불법사용 (2016)
- 광어 양식장에 ‘가축용 항생제’ 유통 (2015)
- 양식 메기서 발암성 물질(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2014)
- 노르웨이산 연어에 항생제, 살충제 다량 투여 (2012,2015)

잔류물질 안전관리 강화 요구

동물용의약품 등 오·남용 방지와 수입 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잔류물질 안전관리체계 개선 요구**

대통령, 총리 말씀

- **살충제 계란 사태와 유사한 일이 없도록 범정부 식품안전관리 개선대책 마련('17.8월)**
-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발표('17.12월)**
  - ➡ **축·수산물 PLS 도입**

* 살충제 계란사태 발생('17.8.14) 전후로 계란 안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 34.1% 증가하고, 소비량은 46.0% 감소[한국농촌경제연구원, '17.8.30 기준]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Positive List System (PLS)

- 국내 사용등록·허가 또는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으로
  - 등록·허가된 잔류물질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은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잔류물질은 불검출 수준 (0.01mg/kg)으로 관리

- 일본('06) : PLS

  EU('08) : PLS(농약), Zero tolerance(동물용의약품)

  미국, 호주 ('85) 등 : Zero tolerance

축 ·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도입

PLS 도입 목적(기대효과)

- **국내 축 · 수산물 중 잔류동물약품 안전관리 강화**
  - 동물용의약품의 오 · 남용(안전사용기준 미 준수) 방지
- **수입 축 · 수산물 중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
  -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원천적 차단
  - 외국에서 부적합 축 · 수산물이 국내에서는 적합되어 수입 · 유통되는 사례 방지

우리 국민에게 안전한 축 · 수산물 공급

축 · 수산물 잔류물질 PLS 도입

PLS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축종 · 어종별 충분한 동물용의약품 구비 및 잔류허용기준 확대**
  - (생산자단체 의견) 제도 시행 전에 충분한 동물용의약품 확충 · 정비 등 사전 준비 및 교육홍보 등 여건 조성 필요

허가 체계를 운영하는 동물용의약품에 PLS 단계적 도입

- **[1단계]** 5개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어류** 우선 도입
  ('21.6월 고시, **'24.1.1. 시행**)
- **[2단계]** 기타 축산물(**양, 염소 등**) 및 기타 수산물(**갑각류**)로 **확대 추진**

축 · 수산물 잔류물질 PLS 도입

관계부처 합동으로 축 · 수산물 PLS 도입계획 마련

- **'축수산물 PLS 도입계획 확정' ('20.12월)**
  - * 식품안전정책위원회(국조실) 안건 상정 (11월)

  ⌄

  관련부처 최종 협의(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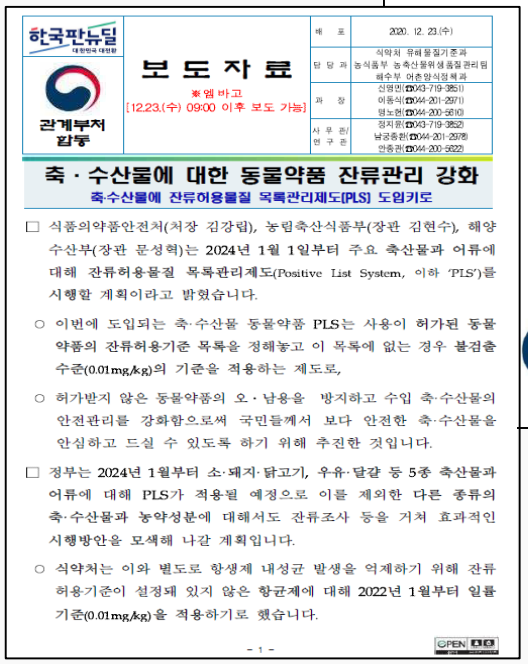
  ⌄

  부처합동으로 PLS 도입계획 발표(12.23.)

축 · 수산물의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도입 계획(안)

2020. 12.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뉴딜 대한민국 대전환

관계부처 합동

보 도 자 료

*엠바고 [12.23.(수) 09:00 이후 보도 가능]

배 포	2020. 12. 23.(수)
담 당 과	식약처 유해물질기준과 농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과 장	신명민(044-719-3851) 이동식(044-201-2971) 명노현(044-200-5810)
사 무 관 / 연 구 관	정지원(043-719-3852) 남궁종환(044-201-2978) 안종관(044-200-5822)

축 · 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

축수산물에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도입키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4년 1월 1일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 도입되는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한 축·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 것입니다.

□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PLS가 적용될 예정으로 이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거쳐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1 -

축 · 수산물 잔류물질 PLS 도입계획

축 ·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건강 보호

PLS 기반 관리체계 확립

① 축 · 수산물 잔류물질 관리체계 개선
② 사용금지물질 확대
③ 기준면제물질 정비

원활한 PLS 시행을 위한 기반 구축

① 동물약품 사용허가 및 잔류기준 확대
② 잔류가능 농약성분 조사 및 잔류기준 강화
③ 수입식품 중 잔류물질 기준설정

부처 협업체계 강화

① 생산단계 축 · 수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
② 수입 · 유통단계 축 · 수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
③ 부처합동 이관계자들과의 협업 및 적극 소통

03.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추진현황

PLS 기반 관리체계 확립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어류의 동물용의약품 우선 도입

행정예고('20.12월) → 고시 ('21년 6월) → 시행('24.1월)

현 행	개 정(2024.1.1.)
8)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8)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1)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기준 적용	(1) (현행과 같음)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어류)에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0.01 mg/kg 이하를 적용, 다만, 성장보조제(성장촉진, 체중증가 성분 등),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을 적용
⑤ 식용동물 등에 대해 이 고시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항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⑥ 상기 ⑤항 이외의 식용동물 등에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항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 CODEX 기준	(좌 동)
㉯ 유사 식용동물의 잔류허용기준 중 해당부위의 최저기준	
㉰ 항균제의 경우 0.01 mg/kg	

PLS 기반 관리체계 확립

사용금지물질 확대, 잔류허용기준 설정 면제물질 정비

1

- 관련법령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제조 · 수입품목 허가를 하지 않는 동물용의약품
-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물질

→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26종**

- 니트로푸란제제, 클로람페니콜, 말라카이트그린 등
- 관련법령 :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2

- **인체 위해가 없거나** 축 · 수산물에 **잔류 되지 않는 물질**

→ **잔류허용기준 면제물질 [별표 8] 177종**

①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동물이 섭취하는 사료 등

② 일반적으로 인체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이 명확한 성분

PLS 기반 관리체계 확립

동물용의약품 사용허가 및 잔류허용기준 확대

- 항균제 92종
- 구충제 26종
- 살충제 23종
- 지사제 3종
- 진정제 7종
- 항원충제 23종
- 성장보조제 9종
- 항히스타민제 2종
-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12종
-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4종
- 기타 13종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별표 5] 214종

[별표5]에 따로 식품명이 없는 경우

부산물

✓ 내장, 뼈, 머리, 꼬리, 발, 껍질, 혈액 , 수산물의 알, 고니 등 식용 가능한 부위
✓ 축산물 : 해당동물의 근육 기준 적용
✓ 수산물 : 어류의 기준 적용

가공식품

✓ 원료의 함량에 따라 원료 기준 적용(수분 함량 고려)

로얄젤리, 프로폴리스

✓ 벌꿀 기준 적용

PLS 기반 관리체계 확립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목 차

제1. 총 칙 1

1. 일반원칙 3
2. 기준 및 규격의 적용 7
3. 용어의 풀이 9
4. 식품원료 분류 15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1

1. 식품원료 기준 23
   1) 원료 등의 구비요건 23
   2) 식품원료 판단기준 26
2. 제조·가공기준 30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34
   1) 성상 34
   2) 이물 34
   3) 식품첨가물 34
   4)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 34
   5) 오염물질 37
   6) 식품조사처리 기준 47
   7)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49
   8)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53
   9)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59
   10) 부정물질 63
   11)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6-9-Tetrahydrocannabinol) 기준 64
   12) 우루시올(urushiol) 성분 기준 64
   13)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 Ⅲ 기준 64
   14) 식육에 대한 규격 64
   15) 원유에 대한 규격 64
   16) 수산물에 대한 규격 65
   17)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캡슐류 66
   2) 원료의 보관 및 저장 287
4. 조리 및 관리기준 288
5. 규격 289
6. 시험방법 290

제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293

1. 검체채취의 의의 295
2. 용어의 정의 295
3. 검체채취의 일반원칙 295
4. 검체의 채취 및 취급요령 297
5. 검체채취 기구 및 용기 300
6. 개별 검체채취 및 취급 방법 301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 별표 1-1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 별표 2-1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 ..... 별표 3-1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 별표 4-1
[별표 5]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 별표 5-1
[별표 6]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 별표 6-1
[별표 7]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설정 지침 ..... 별표 7-1
[별표 8]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면제물질 ..... 별표 8-1

부처 협업체계 강화

생산단계 축 · 수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 강화

1

- 원유 중 잔류물질 프로그램(NRP) 도입
- 거래기록 의무부과 대상확대, 도매상 · 판매상 관리 강화
- 수의사 처방 의무대상 항생제 확대

('17, 32종→'20, 모든 항생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22.11.13. 시행)

→ **생산단계 축산물 중 잔류물질 안전관리 체계 구축**

2

- 수산물 잔류물질 프로그램(NRP) 검사강화('20~)
- 동물용의약품 전자처방시스템 도입 추진('20~)

처방전 발급 대상 동물약품의 양식장 처방 · 판매 관리체계 마련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및 거래 · 사용기록 의무부과 추진('21~)

→ **생산단계 수산물 중 잔류물질 안전관리 체계 구축**

부처 협업체계 강화

수입 · 유통단계 축 · 수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 강화

- **생산 · 유통 축 · 수산물 중 잔류물질 검사관련 규정 정비('19~)**
  부적합 시 위반농가로 지정하여 규제검사 강화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 **수입 축 · 수산물 중 잔류물질 안전관리 강화('20~)**
  중점 · 정밀검사 및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 항목 및 비율 조정 · 확대
  잔류물질 기준 및 동시시험법 확대에 따른 검사항목 확대 등

수입 · 유통단계 축 · 수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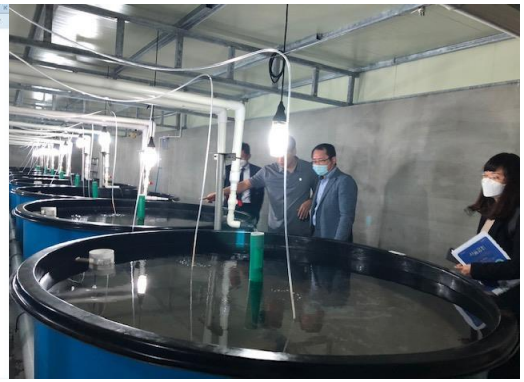
부처 협업체계 강화

부처합동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 및 적극 소통

- **정기적인 부처협의회 운영**
  -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협의체 (4회/연)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실무협의체 (연중상시)

- **이해관계자 대상 교육 및 홍보 강화**
  - 축 · 수산물 생산농가, 제조 · 수입업체, 외국 대사관 등 대상 정책설명회 (4, 9월)
  - 생산농가, 양식장 현장방문 (연중)







PLS 도입 향후계획

1. 단계별 축 ·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도입 (2단계 기반 확보)

- 동물용의약품 사용허가 및 잔류허용기준 확대
- 검사관리강화를 위한 동시다성분 시험법 확대

2. 원활한 PLS 추진을 위한 범부처 협업강화

- 주기적인 PLS(1단계) 준비 상황 점검(분기별, 부처합동)
- 동물용의약품 기준확대, 안전성 조사계획 등 준비상황 최종 점검('23)
- 2단계 도입 방안 마련

3. 이해관계자 대상 적극 소통

- 농어민 등 이해관계자 대상 부처합동 설명회, 현장 애로사항 청취
- 교육 · 홍보 활성화

04. 향후 잔류기준 등 개정 사항

축·수산물 중 잔류물질 안전관리

잔류 가능한 농약 조사 및 기준 확대

- 살충제 83종
- 살균제 39종
- 생장조절제 1종
- 제초제 9종
- 생장조절제, 제초제 1종
- 생장조절제, 살충제 1종
- 살균제, 살충제 1종
- 항산화제 1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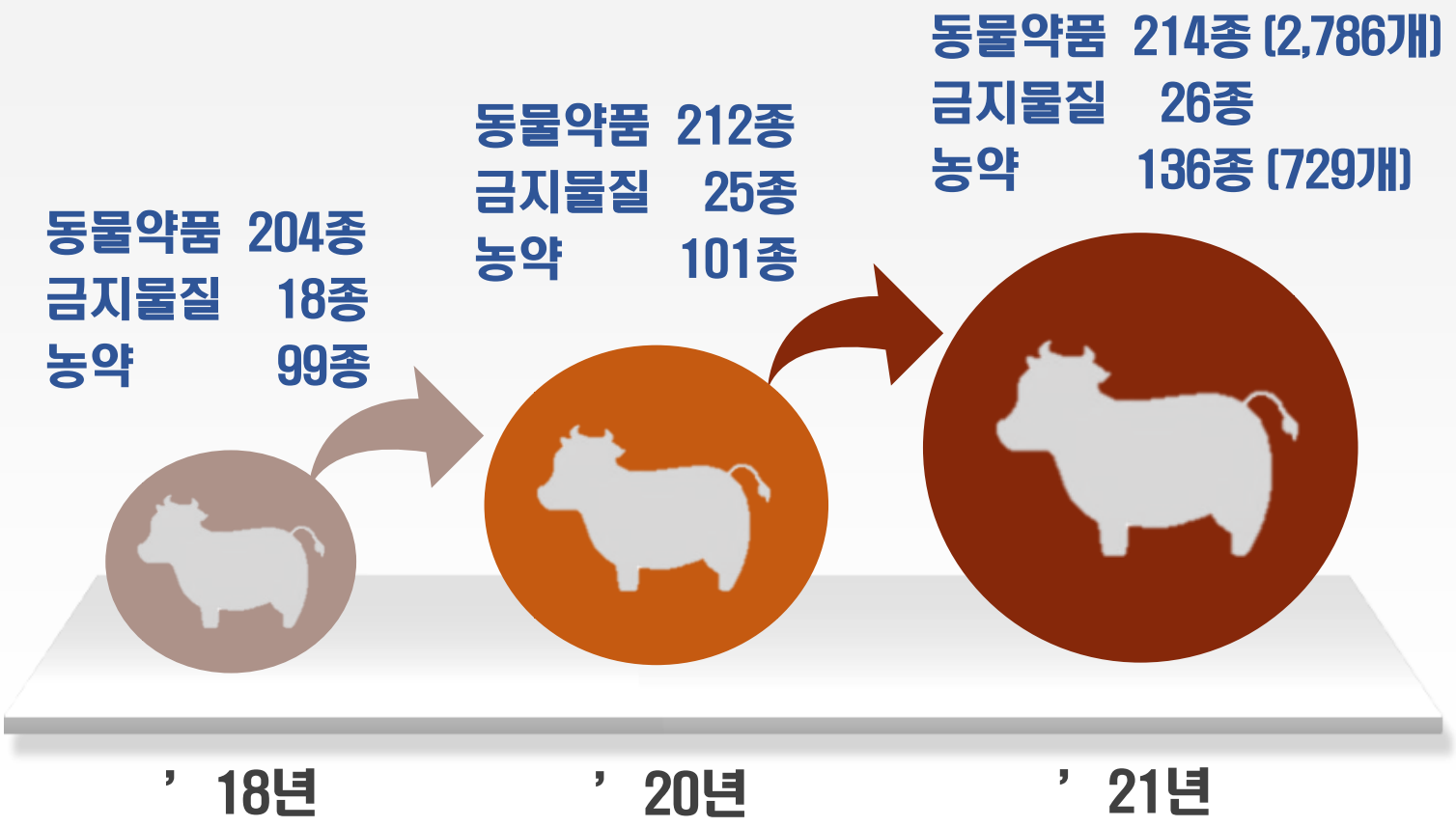
축 · 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별표 6] 136종

- **사료 및 동물용의약외품으로부터 축 · 수산물로 이행되는 농약 기준 확대**
  국내외 사료 중 농약 기준 및 축 · 수산물로 이행관련 자료평가

- **환경을 통해 잔류가 우려되는 농약성분 관리**
  생산 · 유통단계 축 · 수산물 중 농약 잔류실태 조사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합동)

축 · 수산물 잔류물질 기준 설정 현황

잔류허용기준수



'22년 잔류기준 등 제·개정사항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제·개정(행정예고 '21.11.30.→시행 '22.7.1.)

* 케토프로펜 잔류허용기준 신설

식품명	mg/kg	식품명	mg/kg
소근육	0.05	소신장	0.05
소지방	0.05	우유	0.05
소간	0.05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 시험법 신설(고시 '22.2.21.→시행 '22.7.1.)

* 동물용의약품 151종 동시 정량시험법(LC/MS/MS) 신설
* 중복되는 개별 정량시험법 40개를 삭제하여 동시 시험법 위주로 시험법 단일화
* 시험법에 다양하게 표기된 용어, 문구, 표기법 등 통일

’22년 잔류기준 제·개정사항

축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개정(행정예고 ‘21.11.30)

* 스피노사드 잔류허용기준 개정

식품명	현행 (mg/kg)	개정 (mg/kg)
가금류고기	0.3(f)	0.1
가금류지방	-	1.0
가금류부산물	-	0.2
알	0.03	0.5

* 농약 5종 잔류허용기준 신설

  사이할로트린, 클로란트라닐리프롤, 테플루벤주론, 티아메톡삼, 플로니카미드

* 축산물 중 농약 시험법

  ① 사이할로트린 시험법 신설

  ② 클로란트라닐리프롤 등 4종 다성분 시험법 마련(기존 7.3.1.8 루페뉴론 등 7종 다성분 시험법에 포함)

  ③ 7.3.1.6 “알드린 등 29종 다성분 시험법” 중 클로르피리포스 정량분석법으로 개정

Q & A

- 질문사항을 "채팅창" 에 작성해 주세요!

  ☞ 작성된 질문은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설명회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식약처 > 법령/자료 > 자료실 > 학술토론회

청렴한 식약처
국민 안심의 시작

【공직자 부조리 및 공익신고안내】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보호됩니다.

▶ 부조리 신고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 코너

▶ 공익 신고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 신고센터 > 부패 . 공익신고 상담" 코너